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967

발의연월일: 2023. 5. 12.

발 의 자:최형두・임이자・서범수

김예지 · 조해진 · 조명희

서병수 · 강기유 · 김태호

김영선 · 엄태영 · 안병길

김상훈 · 김성원 · 구자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고,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, 이해충돌이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「대한민국헌법」 제46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, 특정 국회의원이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가

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'가상자산'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 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2조의2제1항제7호 다목 신설). 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제1항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2(사적 이해관계의 등록)	제32조의2(사적 이해관계의 등록)
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	①
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(재선	
거·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	
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	
이내를 말한다)에 당선인으로	
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	
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	
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	
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	
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	
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	
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	
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의원 본인, 그 배우자 또는	7
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	
다음 각 목의 재산(소유 명의	
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	
재산, 비영리법인에 출연한	
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	
포함한다)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다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
	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
	<u>가상자산</u>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